

#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

## Countermeasures and Uses of Origin Cumulative Criteria in the Mega-FTA

: Focused on SMEs' Overseas Expansion

임 목 삼\* Mok-Sam Lim

임 성 철\*\* Sung-Chul Lim

I 목 차 I	
I. 서론	IV. 결론
II. FTA 원산지 누적기준과 경제적 효과	참고문헌
III. Mega-FTA 시대에 누적기준 활용 방안	Abstract

### 국문초록

Mega-FTA<sup>1)</sup>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인제개발팀장, 제1저자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겸임교수, 교신저자

1) Mega-FTA는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해온 양자간 FTA의 확장된 개념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WTO 보다는 참여국이 적지만 다자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주제어> Mega-FTA, 누적기준

## I. 서론

최근 일부의 우려<sup>2)</sup>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FTA 확산은 지속되고 있다.<sup>3)</sup>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FTA 체제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도 FTA에 가세하여 서로 간에 FTA로 인한 차별을 피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구촌 전체가 자유무역을 위해 순항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세계화를 추진해온 선진국의 FTA 정책은 체결국간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며, 원산지 기준을 활용한 비교우위 자국 산업의 차별적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있다.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 경제국의 세계화에 촉매역할을 했고, 그 결과 거대 경제국(미국, EU,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 체계 재편을 Mega-FTA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Mega-FTA 추진의 핵심은 주요 경제권역에 대하여 기존의 FTA 협정보다 강력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이므로 신흥 경제국인 우리나라는 그간 다져온 상품무역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2) 최근 영국의 EU 탈퇴 선언과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거론되는 한-미 FTA무용론 등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FTA 재협상 등이 예견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보호주의·고립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Mega-FTA 등에 대한 거부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나 지역경제의 통합(EU)이나 FTA를 통하여 입증된 자유무역의 순기능을 일시적인 무역감소로 인해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 최근 타결된 중남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과의 한-중미 FTA를 비롯하여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58개국 16개 협정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경험해온 양자간 FTA와 달리 Mega-FTA는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의 확인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해외생산기지의 구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ega-FTA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기업이 고려해야하는 산업 전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FTA 원산지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요국의 FTA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한 Estevadeordal(2000), 방호경(2004), 정인교 외 3인(2005), 강진석(2006), 안용린(2007)이 있고, FTA 원산지 규정의 활용 및 개선안 등에 관하여 김한성 외 3인(2008), Kawai & Wignaraja(2008), 최낙균 외 2인(2009), 김무한(2010), 조미진·안경애(2011), 김영춘 외 2인(2012) 등이 있었으며, 원산지 누적기준에 특화된 연구는 Estevadeordal 외 1인(2005), 권순국(2011, 2012), 김영춘 외 2인(2015), 손수석(2012)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한편, 배찬권 외 3인(2012), 조미진(2014), 장용준 외 1인(2015) 등은 UN Comtrade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sup>4)</sup>에 근거한 중간재 무역의 경제 효과 분석을 한 바 있고, Mega-FTA 추진 등에 관한 연구는 최낙균 외 2인(2008), 최낙균 외 1인(2015) 등이 참여국의 산업 연관 관계와 수출 부가가치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통합과 추진에 관하여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FTA 원산지 규정의 내용과 활용 방법 등 양자간 FTA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중간재 무역 연구는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는 특정 FTA에 대한 반증으로 활용되어 FTA 추진 동력에 밑거름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다자간 FTA라 할 수 있는 Mega-FTA시대에 맞는 누적기준의 해석과 활용 및 그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연구 성과를 일부 견고히 하느라 제안한 소견을 보완하는 탐색적 통계조사도 덧붙여 정책수립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FTA 관련 협정문·선행논문과 보고서 등과 국내외 각종 통계지표를 참조하였다.

## II. FTA 원산지 누적기준과 경제적 효과

4) 중간재 교역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수출입통계에서 중간재를 따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UN의 BEC 코드는 HS 6단위 기준에 따른 중간재 분류 기준인데, 중간재 외에도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한 별도의 구분은 명시하고 있다.

## 1. 누적기준의 개요

누적기준이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기준이다(Antoni Estevadeordal and Kati Suominen, 2005; 김영춘 외 2인, 2015).

원산지 기준의 기본원칙은 일방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실질적인 변형(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생성 등)이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누적기준은 이러한 원산지 기준의 예외로써 FTA 역내국 간 재료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보충적 기준이다.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재료(비원산지 재료)는 타방 당사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없이는 원산지가 인정될 수 없으나, 누적기준을 허용하게 되면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 기준은 최종완성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어 원산지 재료가 된다.

누적기준이 허용된 FTA 역내국에서는 서로 간의 재료나 부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역내 가공 산업이 촉진되어 역내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재료 교역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FTA 국가의 재료도 누적을 인정하기도 한다.

## 2. 누적기준의 유형

누적기준은 누적의 형태에 따라 양자교차완전누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누적이 투입하는 요소에 따라 재료·공정누적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지역적 범위에 따라 양국·다국누적으로 나누기도 한다(이영구 외 2인, 2016).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협정은 모두 양자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양자누적은 FTA 상대국에서 생산된 중간재 등 재료를 역내로 반입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한 뒤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반입한 투입재료에 대하여도 자국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즉, 해당 FTA 협정의 역내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나 중간재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면 자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한편, 양자간 FTA에서 협정 당사국 내 재료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충적 원산지 기준으로 사용하던 누적기준은 FTA 확산에 따라 중복 체결된 협정으로 인해 재료 공

급에 장애를 겪으면서 확대하게 되었는데(손수석, 2012)<sup>5)</sup>, 이 때 추진된 양자누적의 확대 개념이 교차누적(Diagonal Cumulation)으로 1997년에 제정된 범유럽원산지 기준(Pan-European Rules of Origin)에서 사용 되었다.<sup>6)</sup>

범유럽원산지기준은 FTA 당사국(AB국) 중 일방 당사국이 다른 FTA 당사국(CA국 또는 CB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두 협정 간 교차적으로 누적을 허용하였다.<sup>7)</sup>

교차누적은 동일한 원산지 기준 하에 서로 다른 FTA로 연결된 2개국 이상의 무역에서 적용되며, 각각 상호간에 체결된 모든 FTA 회원국들도 이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캐나다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교차누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8)</sup>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단일의 특혜 영역<sup>9)</sup>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가간 적용하는 누적방식으로 협정 당사국들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공공정을 최종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반영하는 원산지 기준이다.

즉, 단일 특혜 영역에서 수입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sup>10)</sup>의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이 인정된다.

양자누적과 완전누적의 차이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에서 발생한다.

양자누적은 교역된 재료가 반드시 역내산이어야 하지만 완전누적은 역내산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즉 완전누적은 재료 전체가 역내산일 필요는 없고, 재료의 일부(구성품이나 공정)라도 원산지가 인정되면 이를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1990년대 유럽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급격히 확산되는 FTA로 인하여 중복 체결된 협정에 원산지기준을 각기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해 효율적인 재료공급에 애로를 겪었다. 이는 무역의 부정적인 전환 효과나 무역억제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6)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원산지기준 안내 중 "PEM 누적과 PEM 협약 시스템에 대한 설명" 인용([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_e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_en), 2016. 9. 13, visited)

7) 범유럽누적체제(Pan-European Cumulation System: PECS)는 EU와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국가들을 참여국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2002년 바르셀로나 선언에 따라 12개국(레바논, 모로코, 몰타, 사이프러스, 시리아,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이 추가되어 범 유럽 지중해 누적(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체제로 발전되었다. 최근 알바니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몰도바공화국도 참여국으로 확대되었다.

8) 한-캐나다 협정 제3.7조 제3항.

9) 단일한 특혜 영역이란 계약국이 다수인 협정에서 역내의 범위를 양국가간이 아닌 계약국 모두를 의미한다. EU의 경우는 협정에서 EU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일국가로 본다.

10) 수입된 재료가 수출국의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비원산지) 그 재료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나 수행된 공정 및 부가가치는 원산지로 인정한다.

### 3. 누적기준의 경제적 효과

#### 1) 긍정적 효과

누적기준 활용의 경제적 이익은 FTA 협정국 내 재료 교역의 활성화이다.

원산지의 인정은 특정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FTA 역내국의 재료를 자국의 원산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협정 당사국 내 재료 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양자누적의 경제적 실익은 FTA 원산지 특혜세율의 혜택을 넘어서 재료 교역의 증진을 통한 역내 가공 산업의 촉진과 투자의 유치이고, 완전누적은 그 범위를 넘어서 원산지 재료가 아니더라도 내재된 원산지도 인정하여 양자누적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양자누적은 당사국의 산업만 조정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완전누적의 경우는 당사국들의 산업과 자국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야 경쟁우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교차누적은 완전누적과 달리 FTA 협정 당사국이 타 FTA 협정 원산지 재료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 체결 협정에서 조정된 당사국의 경쟁우위산업을 지속할 수 있고, 재료의 교역 또한 주변국 간에 원활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협정국과 재협상하여 교차기준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선진국(소비국)과 동아시아(생산국)를 잇는 FTA 허브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차누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FTA 역내국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FTA 체결국의 재료 등을 원산지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급처를 저렴한 주변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즉, 교차적으로 두 협정이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게 되므로 재료 교역에 있어 자유무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교역과 투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 2)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Mega-FTA는 TPP와 RCEP이다.

최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타결되

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국<sup>11)</sup>은 완전누적을 통해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sup>12)</sup>

완전누적은 교차누적과 달리 역외국에 대한 원산지 재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투자되었던 저비용 구조의 산업을 자국 내로 재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세아 국가들 또한 거대 미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원산지 재료의 역내 교역량이 증가될 것이므로 TPP의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16개국<sup>13)</sup>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타결될 협정의 누적기준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산업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CEP에서 완전누적이 채택될 경우, 역내에 생산비용이나 원재료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료 공급처(중간재 생산기지)를 이전하여야 함과 동시에 재료의 공급처가 더욱 확대되므로 국내 저비용 구조의 재료 가공 산업은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대비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을 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교차누적이 인정될 경우 EU나 EFTA, 미국과의 교차누적 인정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과 역내 저비용 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sup>14)</sup>

누적기준의 부정적 효과는 저비용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의한 국내 해당산업의 공동화 문제이다.

다자간 FTA에서 완전누적 또는 교차누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의 저비용 구조의 산업을 고효율 구조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비용이 발생된다.

11) TPP 참여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등 12개국이다.

12) TPP 협상 타결 이후 참가국은 자국 내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13) RCEP 참여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다.

14) RCEP에서 교차누적이 인정되고 한-미 FTA 협상을 재개해 교차누적을 인정할 경우, TPP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FTA 활용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Ⅲ. Mega-FTA 시대에 누적기준 활용 방안

#### 1. FTA 허브국가의 누적기준 활용

우리나라는 최근 발효된 중국과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하여 아세안을 포함한 중국 등 생산기지와의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이나 EU를 연결하는 동서양의 허브 국가로 위치하게 되었다.

FTA 허브국가로서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비용 생산 제품을 거대 소비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아세안이나 중국으로부터 재료를 조달하여 미국이나 EU에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역내의 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양자누적<sup>15)</sup>이나 완전누적<sup>16)</sup>)하고 있고 역외국으로부터 조달한 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부품은 예외이다.

교차누적을 도입한 한-캐나다 FTA나 EU의 범유럽원산지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이나 아세안으로부터 반입된 재료를 미국이나 EU에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도록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면 Mega-FTA 추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차누적을 통한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비용 구조의 산업이 국내 수출 완성품 제조업과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하므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FTA 전후 제조업의 해외 투자 현황과 중간재 교역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의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국가통계, 수출입은행은 통계자료, 경제통상산업연구소의 무역산업DB<sup>17)</sup> 등을 인용하였다.

15)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캐나다, 중국, 베트남.

16)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17) 경제통상산업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무역산업 DB(Trade Industry DB)는 UN의 BEC 코드(HS 6단위 기준에 따른 중간재·소비재·자본재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각국의 수출입통계와 연계한 통계자료이다. 한국무역협회(K-stat)도 부품·소재에 관한 통계자료를 9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6개국)에 한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2. 해외투자 및 중간재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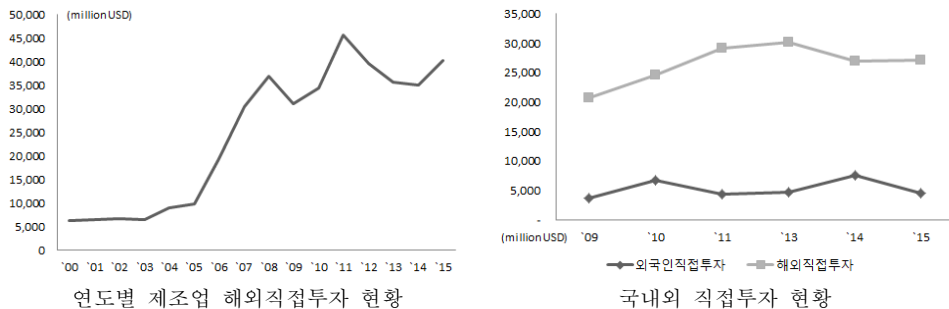
### 1) 국내외 투자 동향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하여 역내에 경쟁우위 산업의 교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허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진국(EU와 미국 등)의 FTA 관세특혜 등을 활용하여 그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확대하였고 더불어 이들 제품군의 가격경쟁력 과 제품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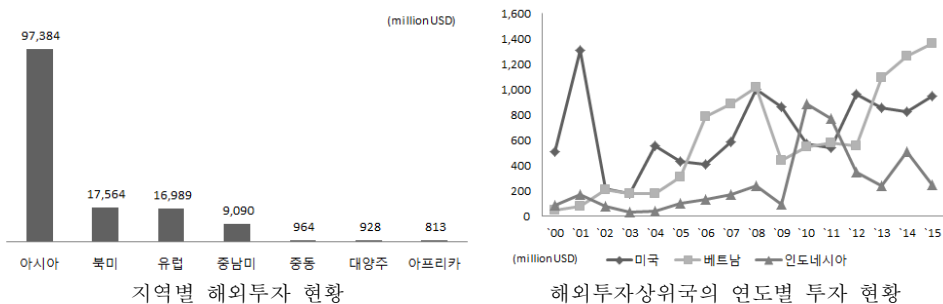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생산비용이나 물류비 절감 등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기업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림 1> 국내외 직접투자 현황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수출통계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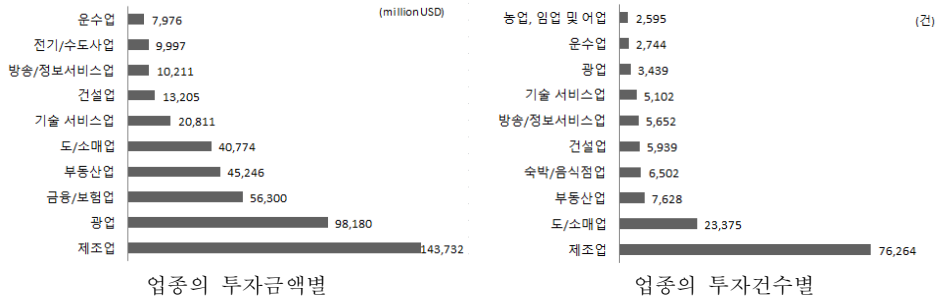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80~'15)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자료 가공

따라서 기업은 적극적인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투자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제조업 해외투자 현황을 보면,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FTA를 활용한 교역이 본격화된 `04년부터 해외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금융경색으로 인한 투자감소의 시기인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전체 해외투자금액 중 업종별 상위 10대 업종의 해외투자 비중은 <그림 3>과 같이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7%에 가까우며, 투자건수 기준으로도 약 9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1%, 건수기준으로 50%를 상회한다.

<그림 3>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80~`15)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자료 가공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 또한 증가세라고 보기가 힘들다.

FTA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된 `06년부터 기업은 시장 확대와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투자가 된 지역은 아시아이며, 국가 중에는 중국의 비중이 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4%)과 베트남(3%) 및 인도네시아(2%)가 뒤를 잇고 있다.

점차 미국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최근에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미국을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제조업종별 해외투자 세부 현황('80~'15)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자료 가공

<그림 4>에서 보면 제조업종 가운데 상위 10대 업종이 전체 해외투자금액 중 81%를 차지하고 있고 건수기준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최대 투자업종은 전자부품과 자동차 산업이다.

이 두 업종은 앞서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쟁우위 업종으로 해외투자 제조업 중 39%에 해당되는 주력산업이다.

그러나 해외투자건수 기준일 때는 자동차 산업 보다 섬유와 의복산업이 12,622건으로 전자부품산업 만큼 투자 빈도가 높다.

섬유산업은 저비용 산업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 등을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2)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FTA 활용에서 누적기준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내국에 경쟁우위산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국내에 구축된 후방산업을 해외에 이전하여 가격경쟁력이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경쟁우위산업이기 때문에 통상 국내에 관련 산업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해당 산업은 성장일로를 밟을 수도 있지만, 정보혁명의 시대에 지속적인 제조업의 경쟁우위고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sup>18)</sup>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발을 소비하는 미국의 신발산업이 80년대 우리나라를 거쳐 90년대 중국에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로 이전된 사례를 보건데, 노동 집약적 산업

18)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달성되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보다 더욱 짧은 시간에 이루었고, 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에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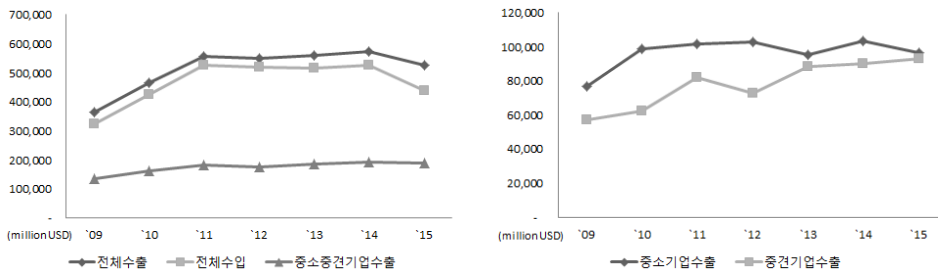
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진국에서는 생산기지를 해외에 구축하거나 위탁 생산<sup>19)</sup>을 하고 있다.

해외생산기지의 구축은 비단 대기업만의 경영전략은 아니고, 상당수의 중소기업 또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현황을 보면 <그림 5>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의 누계에서 21%에 해당될 정도로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주체별 해외투자 현황에서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그림 6>과 같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많지만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을 3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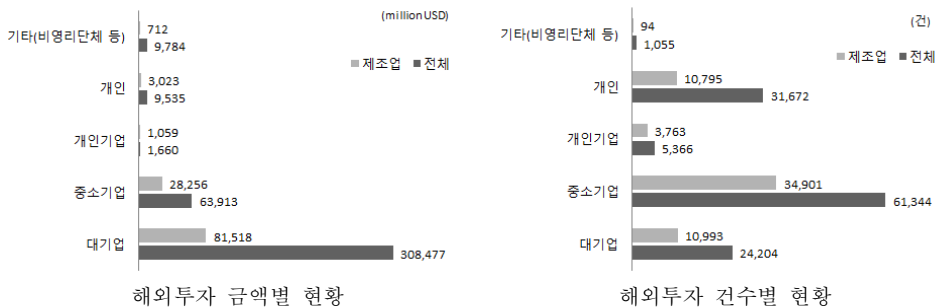
<그림 5> '09~'15년 중소기업 수출현황



전체 수출입 대비 중소기업 수출 현황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수출통계 자료 가공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황

<그림 6> 해외직접투자 주체별 현황('09~'15)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자료 가공

19) 애플은 휴대폰의 생산을 폭스콘(Foxconn, 대만 흥하이정밀공업의 상표)에 위탁하고 있는데, 폭스콘은 중국에 설립한 조립라인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의 경우에 대기업은 금액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26%를 투자하였고 신고건수의 45%가 제조업 투자신고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액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44%를 투자하였고 신고건수의 57%가 제조업 투자신고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해외투자는 금액기준으로 64%, 신고건수의 70%가 제조업 투자였다.

해외투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비용 구조의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가격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 3) 중간재 교역 동향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주 투자지역은 아시아로 확인되었다.

해외투자의 규모는 대기업이 비용적인 측면으로 중소기업 보다 월등하지만,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월등히 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FTA를 계기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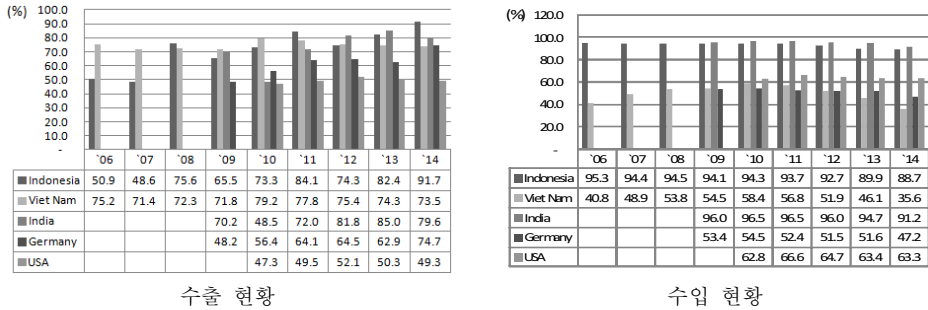
중간재의 교역 동향 분석을 위해 UN의 BEC 코드에 따라 분류된 원료(primary goods)<sup>20)</sup>와 중간재(intermediate goods)<sup>21)</sup>의 교역 현황을 FTA 상대국 중 주요 투자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20) 산업의 제조공정의 첫단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가공 식료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가공을 거쳐 중간재가 된다.

21) 가공되어 최종재에 사용되기 위한 제품으로 가공재(processed goods)와 부품과 부분품(parts & components)으로 구분된다. 가공재는 산업에 사용될 가공된 음식품이나 가공된 연료나 운활유를 의미하고, 부품이나 부분품은 자본재(Capital Goods)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말한다.

<그림 7> 주요국의 전체수출입 대비 중간재 비중



자료 : RIETI-TID 2014 통계자료 가공

FTA 상대국 가운데 제조업과 관련하여 최대의 해외 투자처는 아시아와 미국이고, 아시아의 최대의 투자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이다.

중간재 교역을 조사하기 위해 최대 해외투자국인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독일과 인도를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sup>22)</sup>. 그리고 기간은 FTA 발효 전년부터 통계조회가 허용되는 `14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우선 해외투자 주요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을 조사하였는데, 중간재는 원료와 가공재 및 부품과 부분품의 교역량을 합산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이 전반적으로 FTA 발효 초기보다 중간재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을 제외한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어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 있어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수입의 대부분이 중간재였으나, 독일과 베트남은 50%, 미국은 60%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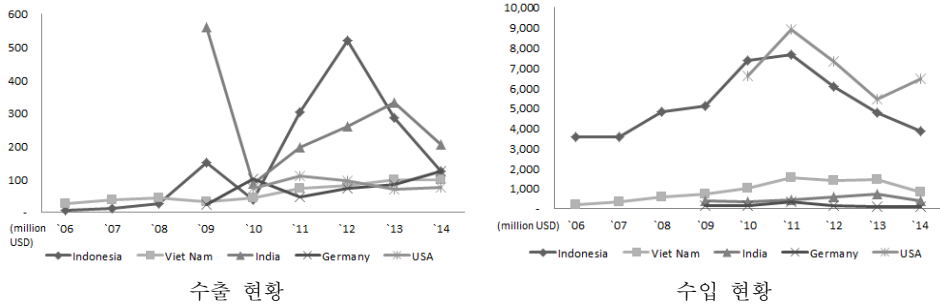
한편,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우를 독일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원료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국가들은 소비재 등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 상 원료의 수출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으나 모두 증가 추세에 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수출신장의 폭이 크다.

22) 독일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할 이유는 자동차 산업에 경쟁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인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진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림 8> 주요 FTA 발효 전후 원료(primary goods)의 교역 현황



자료 : RIETI-TID 2014 통계자료 가공

다음은 중간재의 교역을 원료와 가공재 및 부품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원료의 수입규모는 <그림 8>와 같이 독일과 인도를 제외하고 수출보다 10배 이상 많지만 신장세에 있다가 '11년을 기점으로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및 독일 모두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료의 수출규모가 수입보다 적은 이유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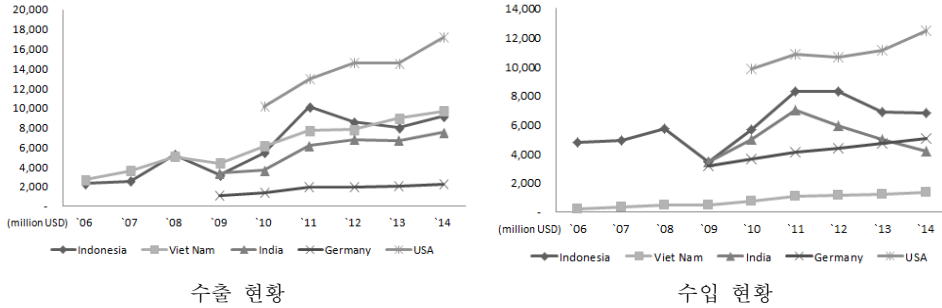
가공재의 경우는 <그림 9>과 같이 원료보다 교역량이 수출입 모두 많은데, 수출은 각 FTA가 발효된 이후 독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신장세에 있다.

수입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신장세에 있는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원료와 가공재의 수입에 있어서는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가공재에 대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9> 주요 FTA 발효 전후 가공재(processed goods)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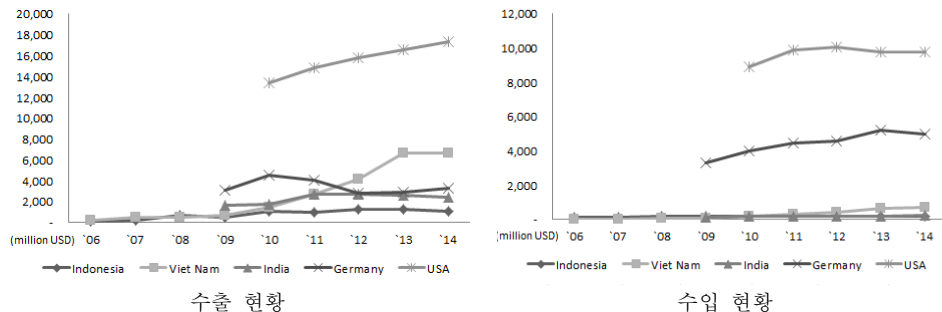
자료 : RIETI-TID 2014 통계자료 가공

부품과 부분품은 <그림 10>과 같이 미국에 수출이 두드러졌고,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 신장세에 있다. 독일은 FTA 발효 초기에는 수출이 신장세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수입의 경우는 수출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미국과 독일로부터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 외의 국가에는 부품과 부분품의 수출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원료와 중간재의 수출입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그림 11>와 같이 각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수출 신장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중간재 산업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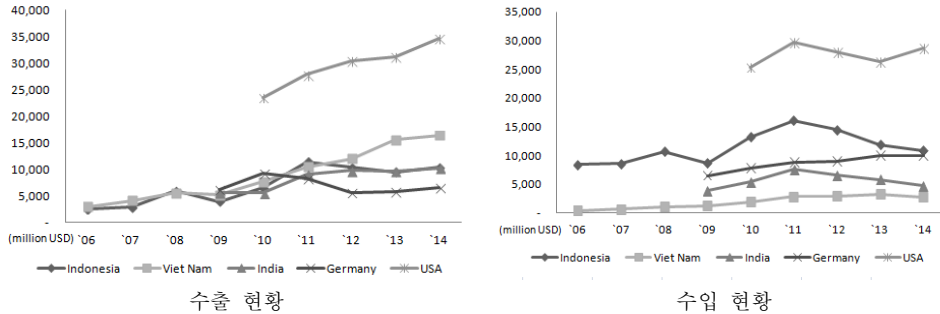
<그림 10> 주요 FTA 발효 전후 부품과 부분품(Parts and Components)의 교역 현황



자료 : RIETI-TID 2014 통계자료 가공



<그림 11> 주요 FTA 발효 전후 중간재(원료, 가공재, 부품 등)의 교역 현황



자료 : RIETI-TID 2014 통계자료 가공

수입의 경우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원료와 독일로부터의 부품류 수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중간재 교역 현황에 따른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의 특징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주로 가공재를 수출하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에는 주로 부품이나 부분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원료나 가공재는 점차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로부터는 가공재와 부품 및 부분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 3. Mega-FTA 시대에 해외투자기업의 활용

앞서서 조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FTA를 활용하기 시작한 '04년 이후부터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그 추세는 최근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5% 수준이나 건수기준으로는 대기업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해외 투자 금액의 97%이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과 유사하게 전자산업과 자동차, 섬유산업이 주축이었으며, 해외투자 건수 기준으로 섬유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비용절감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택이고, 주요 투자 대상 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FTA 체결국인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이다.

한편, 해외투자 주요국 중심으로 중간재(원료, 가공재, 부품 등)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

출액의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 체결 주요국 별 전체 수출입 대비 중간재 교역의 특징은 첫째, 중간재의 수출 비중은 FTA 발효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수입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둘째, 신흥개발국의 중간재 수출입 비중은 높으나 선진국은 전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원료의 교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공재와 부품 등의 교역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투자가 활발했다.

둘째, 신흥개발국은 가공재 중심, 선진국은 부품 등의 수출이 중심인 것으로 보아 생산비용 절감이나 선진시장의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셋째, 중간재는 원료의 교역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즉, 우리나라는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활용한 수출시장 확대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간재 중심 교역 구조를 Mega-FTA와 결합하는 방법은 FTA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첫째, FTA 상대국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료를 현지에서 직접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양자누적의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둘째, 완전누적을 허용하는 Mega-FTA에 대비하여, 생산비용이나 원재료의 수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료 공급처(중간재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저비용 구조의 재료 가공 산업의 해외이전을 장려하여야 한다.

셋째, Mega-FTA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누적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로 이전한 저비용 구조의 재료 가공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을 조속히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일본의 경우 달리 저비용 구조의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병존하고 있다.

미국의 섬유산업과 같이 저비용 구조의 산업제품을 적극 해외 소싱 하도록 권장하거나, 호주의 조선산업처럼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폴란드의 경우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을 조립(완성차 생산) 중심에서 중간재 생산 산업으로 전환한 예도 있다(최낙균 외 2인, 2009).

## IV. 결 론

Mega-FTA는 기존의 양자간 FTA와 달리 체결된 FTA 협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FTA 협정이므로 체결 당사국들은 체결한 협정으로 인하여 주변국들에게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sup>23)</sup>

FTA가 확대될수록 관세율은 낮아지겠지만 낮아진 특혜세율을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의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협정 내 경쟁우위산업의 보호와 활성화의 일환으로 누적기준 등을 활용한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 및 교역과 투자의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Mega-FTA는 일반적인 양자간 FTA와 달리 역내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완전누적, 교차누적 등의 확장적 원산지 기준을 인정한다.

양자간 FTA 체제 하에서도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역내 가공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적기준을 보충적 원산지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Mega-FTA에서는 역내의 범위가 확대되고 가공 산업의 투자 지역 또한 확대되기 때문에 활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간 15번의 FTA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확장된 FTA 경제영토를 발판으로 하여 수출을 촉진하였고, 산업을 조정해 왔으며, 세계표준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 중심이 아닌 안정적인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다가오는 Mega-FTA 시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Mega-FTA는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RCEP과 같이 다자간 FTA의 형태가 있고, 선진소비시장과 대단위 생산기지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형태가 있는데, 두가지 형태 모두 자국 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역내 시장을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른바, 산업네트워크 또는 GVC)이 마련되어야 한다.

Mega-FTA의 시대에서는 그간의 FTA를 통하여 경험한 국경 없는 경제개념이 다수의 국가로 확산되기 때문에 FTA 역내에서 적절하게 위치할 산업-포지셔닝을

23) GATT 제24조제5항 b.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각 구성영역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시에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국 또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이나 또는 잠정협정의 형성 이전에 동 구성영역에 존재하였던 해당관세 기타 통상규칙보다 각기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저비용 구조의 산업은 저렴한 노동력 조달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 유치하여 재료 등은 역내국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조정하는 등의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기에 FTA를 경험한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선별적인 외국인 투자나 산업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FTA 선협국의 산업조정에 대한 사례를 본문에서 잠시 언급 했지만, 경쟁열위산업에 대한 폐쇄는 없었고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발전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산업이나 소비시장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현재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중간재 생산 산업이 혼재된 구조이지만 향후 모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한편, 산업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로부터 발생된 원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공급 정보나 재료에 내재된 공정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하다.

FTA 상대국에도 신뢰성이 인정될 정도의 원산지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국내외 원산지정보가 입력되어 관련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기밀유지를 보장하면서 원산지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부나 관계기관(원산지전문공공기관)이 국내외 원산지 정보의 유통과 증명이력을 관리하여 필요정보(원산지증명)를 제공하도록 하면 된다.

## 참고문헌

- 강진석(2006),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4호 pp.65-89.
- 권순국(2011), 「수입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75.
- \_\_\_\_\_ (2012), “다자적 세계에서 FTA 원산지규정의 무역제한성 완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43-57.
- 김무한(2010),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10.
- 김영춘·성남길·김정숙(2012),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권 4호, p.4.
- 김영춘·박홍규·송병준(2015),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2호, pp.3-28.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2008),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4-205.
- 방호경(2004),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1-58.
- 배찬권·김정곤·금혜윤·장용준(2012),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03, pp.22-203.
- 손수석(2012), “다자적 세계에서 FTA 원산지규정의 무역제한성 완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p.46.
- 안용린(2007),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8(2), pp.75-94.
- 이명구·정재완·정재호(2016), 「FTA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담, p.236.
- 장용준·조미진(2015),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3호, pp.1-26.
- 정인교·조정관·방호경·김석오(201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pp.15-167.
- 조미진(2014),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무역학회지 제39권 제3호, pp.207-230.

- 조미진·안경애(201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Vol. 36 No. 4, pp.83-103.
- 최낙균·정형곤·김한성(2008), 「한·중·일 3국의 FTA 비교 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42-158.
- 최낙균·박순찬(201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4-169.
- 최낙균·이경희·김정곤(2009),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8-210.
- Estevadeordal, Antoni(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pp.1-33.
- Estevadeordal, Antoni and Kati Suominen(2005), *Multilateralism & Regionalism : The New Interface*, UN, p.54.
- Euro-Commission Home-Page(2016), The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and the PEM Convention, General aspects of preferential origin, Available at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_e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rules-origin/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_en)
- Kawai, M. and G. Wignaraja(2008), The Asian “Noodle Bowl :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pp.3-27.

# Countermeasures and Uses of Origin Cumulative Criteria in the Mega-FTA : Focused on SMEs' Overseas Expansion

Mok-Sam Lim  
Sung-Chul Lim

---

## •Abstract•

The Mega-FTA is intended for emerging economies, including developed economies, to expand economies of scale in a single market.

The Bilateral FT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dustries and the inter-country related industries to adjust the origin standard and preferential tariff rates. Therefore, certain competitive industries can expect foreign investment and re-investment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expansion of the market in the region.

However, the mega-FTA should expand the size of the economy under the same preferential tax rates for many Partner countries.

The Mega-FTA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by making use of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mega-FTA, Cumulative Criteria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as a supplemental standard of origin. The Cumulative Criteria is an important FTA utilization factor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mega-FTA.

Using FTA, Korea should export locally produced materials using cheaper labor force in FTA partner country. In addition, in order to prepare the Mega-FTA, which allows full cumulat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overseas transfer of low-cost structure materials processing industry so that the material suppliers can be transferred to the area where production cost is lower and raw material supply is easier.

---

<Key Words> Cumulative Criteria, Manufacturing SMEs, Mega-FTA